2026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

< 목 차 >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 1

[참고 1-1] 초격차·신산업 분야 ····· 7

[참고 2] 지역주력산업 ····· 8

[참고 3] 뿌리산업 ····· 10

[참고 4] 소재·부품·장비 산업 ····· 17

[참고 5] 그린 분야 ····· 26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 ····· 28

[참고 7]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 29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30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31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 32

[참고 10]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 34

[참고 11]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 35

[참고 12] 해외법인지원자금 지원 기준, 용도 등 ····· 39

[참고 13]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상세요건 등 ····· 41

[참고 14] AX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내용 ····· 43

[참고 15]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 ····· 44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1. 제조·모빌리티

분 야	품 목			비 고
제조공정	3D머신비전	3D·4D프린팅	자율제조·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미래신기술(F)
	미세가공기술	이종소재접합기술	지능형기계	
	첨단소재가공 시스템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	비파괴 검사	
	하이브리드 제조	고부가 표면처리기술	스마트 패키징	
	스마트 산업 안전장치	-	-	
로봇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	
항공·우주 /방산	드론(무인기)	항공기	인공위성	미래신기술(D)
	우주발사체 및 시스템	AAM/UAM (항공 모빌리티)	지능형 방호 시스템	
	지능형 타격·작전 시스템	-	-	
모빌리티	첨단 철도시스템	전기·하이브리드차	자율주행차	-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	퍼스널모빌리티 인프라/서비스	수소전기차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	-	
조선·해양	극한환경(북극항로) 해양기술	고효율·친환경 선박	자율운항선박	-

2. 소재·부품

분 야	품 목			비 고
핵심광물/ 미래유망소재	기능성 탄소소재	전도성 잉크	압전·열전소자	-
	초전도체	미세캡슐	바이오 화학소재	
	나노소재·부품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이온성 액체 (이온 전도체)	복합재료	경량화 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기능성 촉매	자극반응성 소재	

분 야	품 목			비 고
	기능성 특수유리	기능성 분리막	고분자 첨가제	
	초고강도 고기능 금속	친환경섬유	핵심광물 자원화	
핵심부품·센서	자외선발광다이오드(UVLED)램프	차세대 전자소자	스마트조명	-
	3차원 이미지센서	3차원 터치기술	바이오센서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융·복합센서	라이다(LIDAR)	

3. 에너지

분 야	품 목			비 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재생열에너지	미래신기술(E)
	해양에너지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원자력·핵융합	원자력발전	차세대원자로·SMR	원전플랜트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연계 공정열원생산	핵융합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슈퍼커패시터	-	
에너지 효율향상	초임계CO2 발전시스템	가스터빈 발전	에너지 가스변환	
	무탄소 가스발전	액화기술	폐열회수	
	에너지 하베스팅	고온환원처리 시스템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분산에너지 시스템	지능형 공조시스템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스마트 직류배전	초고압직류 송배전	가정용에너지 관리	
	제로에너지빌딩	히트펌프	고기능 단열시스템	
이차전지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무선충전	이차전지 재사용	-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원전연계 수소생산	

4.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분 야	품 목			비 고
환경개선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관리	수질오염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 냉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토양정화	통합환경 관리서비스	스마트 상하수도	
	친환경 연료	-	-	
자원순환	금속자원 재자원화	담수화	모듈러 건축	-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유니소재화 제품	재제조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폐자원에너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스마트 농축수산	수직농법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어업	-
그린바이오	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 개발·육종	-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	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
	푸드 업사이클링	수출전략형 K-푸드	-	

5. 바이오헬스

분 야	품 목			비 고
정밀의료 (치료·진단)	재생의료	인공장기	의료용 임플란트	미래신기술(B)
	장내미생물치료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분자진단	유전자 진단	의료 데이터 활용 임상·비임상 예측	
	유전자 활용치료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신경자극 의료기기	
	가상현실기반 의료기기	첨단 고령친화기기	독립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용 로봇	안과용 레이저	의료정보 서비스	
	맞춤형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용 생체적용 소재	-	

분 야	품 목			비 고
차세대 제약·의약품	제약·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미래신기술(B)
	경피약물전달	개량신약	혁신신약	
	나노약물 전달체	바이오베터	합성생물학 (바이오파운드리)	
	차세대백신	-	-	
뷰티테크	혁신형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	-

6. ICT·디지털

분 야	품 목			비 고
통신·인프라	5G/6G 통신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
	고주파 무선통신 기술	가시광통신(Li-Fi)	방송통신인프라	
	RFID	실시간 위치 추적시스템(RTLS)	오픈랜(Open RAN)· AI RAN	
디지털 전환	스마트물류 시스템	확장현실 및 기반·응용기술	스마트홈	미래신기술(F)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지털트윈	XaaS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시티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메타버스	-	
소프트웨어 응용/ 사이버보안	실감형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AI 보안	-
	저작권 보호기술(DRM/CAS)	소프트웨어정의 (SDN)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게임엔진	-	-	

7. 반도체·디스플레이

분 야	품 목			비 고
반도체	3D집적회로	전력반도체소자	시스템반도체	미래신기술(A)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장비	칩렛	
	반도체 소재	-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소재	스크린리스·입체 영상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장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8. 인공지능

분 야	품 목			비 고
AI 인프라 및 핵심모델	기계학습·딥러닝·LLM	지능형 상황진단 및 분석	멀티모달 AI 모델	미래신기술(A)
	차세대 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기술	
	AI 위변조 탐지기술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	
데이터 분석·컴퓨팅	에지컴퓨팅	메모리중심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AI 데이터) 처리·분석	데이터시각화 솔루션	시맨틱기술	
	차세대 데이터저장	슈퍼컴퓨팅	양자컴퓨팅	
AI 융합서비스	AI 의료진단	지능형교통체계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AI 분석 및 예측 솔루션	AI 휴머노이드	AI 기반 콘텐츠 개발	
	AI 에이전트	-	-	

9. 융합지식서비스

분 야	품 목			비 고
지식 서비스	하이브리드형 MICE	융합관광	애드테크	-
	에듀테크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제품/ 시각정보 디자인	
	혁신 모바일서비스	공유경제 플랫폼	구독·경험서비스	
	ESG 정보 서비스	핀테크	글로벌 의료서비스	
미디어· 콘텐츠융합	게임	방송·영상 콘텐츠	케이팝(K-pop)	미래신기술(C)
	웹툰/웹소설	디지털 시각특수효과 (VFX; Visual Effect)	콘텐츠 IP사업화	

* 혁신성장 분야(7차 개정)는 9개 테마, 31개 분야, 249개 품목으로 구성

** 미래신기술 분야는 A(산업AI), B(바이오), C(컬쳐), D(방산, 항공·드론), E(에너지), F(제조혁신)으로 정의하며, 비고란 별도 표기

*** 혁신성장/미래신기술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참고 1-1>

초격차·신산업 분야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 초격차·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참고 2>

지역주력산업

1. 지역 주축산업

지역	주 축 산 업
부산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 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대전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부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전북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전남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지능형 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2. 지역 미래신산업

지역	미래신산업	
	지역단독형	지역협력형
제주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수소 저장·운송
경남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부산	전력반도체	
울산	전기·수소차	
대전	5G·6G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경북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대구	고난도 자율조작	차세대 고성능 센서
강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전남	도심항공교통(UAM)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전북	수전해 수소생산	
충남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반도체 첨단패키징
충북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광주	산업활용·혁신 AI	
세종	데이터·AI 보안	-

<참고 3>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2025.10.1. 개정)

○ 기반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1. 주조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中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中 액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4. 용접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기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中 용접봉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中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아크용접기, 저항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가스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中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Chip mounter)
5. 표면처리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中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中 공업용로, 전기로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1. 사출·프레스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中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2. 정밀가공산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中 레이저 가공기, 방전 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中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제조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中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기타종이가공기계

- 지능화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1. 로봇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센서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산 업 명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비고 >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 3-1>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2025.10.1. 개정)

○ 기반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사형주조	용접	아크용접
	금형주조		저항용접
	다이캐스팅		특수용접
	정밀주조		브레이징
	연속주조		칩레벨 접합
	저압주조		보드레벨 접합
	소실모형 주조		구조용 접합
	특수주조	표면처리	전기도금
금형	사출성형금형		무전해도금
	다색다중성형금형		양극산화
	블로우성형금형		화성처리
	복합성형금형		도장
	프레스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스퍼터링
	파인블랭킹금형		화학기상증착
	특수성형금형	열처리	전경화열처리
소성가공	단조		국부열처리
	압연		침탄열처리
	압출		질화열처리
	판재성형		복합열처리
	특수성형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 차세대 공정기술

–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사출·프레스	고분자 가공기술	적층제조	분말가공기술
	고분자 성형기술		용융기술
	복합재료 제조공정 기술		기타 적층 관련기술
정밀가공	절삭가공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고분자 박막제조기술
	연삭가공		고분자 코팅제조기술
	연마가공		제지공정
	광에너지응용가공		-
	전기에너지응용가공		-
	화학에너지응용가공		-

– 지능화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로봇	로봇생산자동화기술	센서	계측기술
	로봇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센서기술
	자동화기계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화기술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솔루션	엔지니어링 설계	설계기술
	생산관리 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 서비스
	계량분석 서비스		시뮬레이션 서비스
	시험관리 서비스		컴퓨터 이용설계(CAD) 관련 소프트웨어
	검사관리 서비스		컴퓨터 이용제조(CAM) 관련 소프트웨어
	분석관리 서비스		주조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서비스		용접 관련 소프트웨어
	-		소성가공 관련 소프트웨어
	-		기타 뿌리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비고>

1.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2. 차세대 공정기술 중 지능화 공정기술은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한다.

<참고 4>

소재·부품·장비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024.10.18. 개정)

1. 소재·부품의 범위

구분	적용범위(소재・부품)	분류코드 (KSIC-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면 방적사	13101
	모 방적사	13102
	화학섬유 방적사	13103
	연사 및 가공사	13104
	기타 방적사	13109
	면직물	13211
	모직물	13212
	화학섬유직물	13213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13219
	편조 원단	13300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13401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13402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13403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13409
	부직포 및 펠트	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	13993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1399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17103
	위생용 원지	17106
	기타 종이 및 판지	1710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20111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20119
	수소	20121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20122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20129

구분	적용범위(소재・부품)	분류코드 (KSIC-1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20131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0132
	합성고무	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2020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20203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20321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20322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20411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20413
	계면활성제	2042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20491
	접착제 및 젤라틴	2049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20499
	합성섬유	20501
	재생섬유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 물질	21100
	체외 진단 시약	213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고무 타이어 및 튜브	22110
	고무 패킹류	22191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22192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22199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2211
	플라스틱 필름	22212
	플라스틱 시트 및 판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22214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1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9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2229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23111
	안전유리	23112
	기타 판유리 가공품	23119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23121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23122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23129

구분	적용범위(소재・부품)	분류코드 (KSIC-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1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23222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23312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23991
	연마재	23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23993
	암면 및 유사 제품	23994
	탄소섬유	23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999
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24113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1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2
	철강선	24123
	주철관	24131
	강관	24132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24133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24191
	그 외 기타 1차 철강	24199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3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9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2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9
	기타 1차 비철금속	24290
	선철 주물 주조제품	24311
	강 주물 주조제품	24312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24321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3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25121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25122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2512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25130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25200
	분말 야금제품	25911
	금속 단조제품	25912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25913

구분	적용범위(소재・부품)	분류코드 (KSIC-11)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25914
	금속 열처리제품	25921
	도금제품	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25923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25924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25929
	톱 및 호환성 공구	25934
	볼트 및 너트류	25941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25942
	금속 스프링	25943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25944
	피복 및 충전 용접봉	25995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26112
	발광 다이오드	26121
	기타 반도체소자	26129
	액정 표시장치	26211
	유기발광 표시장치	26212
	기타 표시장치	2621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26223
	전자부품 실장기판	26224
	전자축전기	26291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26292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26293
	전자감지장치	26294
	그 외 기타 전자부품	26299
	기억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26321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26322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26323
	기타 주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329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10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1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9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1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9

구분	적용범위(소재・부품)	분류코드 (KSIC-11)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266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12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1
	치과기공물(부품에 한정한다)	27192
	치과용 임플란트(부품에 한정한다)	27193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4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2719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9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3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4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215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9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27220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27301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에 한정한다)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및 발전기	28111
	변압기	28112
	에너지 저장장치	28113
	기타 전기 변환장치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28121
	전기회로 접속장치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28123
	일차전지	28201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28202
	기타 이차전지	28209
	광섬유 케이블	283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28303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28410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3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9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1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2

구분	적용범위(소재・부품)	분류코드 (KSIC-11)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8520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28902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29111
	기타 기관 및 터빈	29119
	유압기기	29120
	액체 펌프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29132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29133
	구름베어링	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29150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1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2
	컨베이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71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2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4
	기체 여과기	29175
	액체 여과기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29177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80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1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2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29193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99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10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30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1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50

구분	적용범위(소재・부품)	분류코드 (KSIC-1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29280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29291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2
	주형 및 금형	29293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301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3039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31114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3120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31312
	항공기용 엔진	31321
	항공기용 부품	31322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10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31921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31922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2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

구분	적용범위(장비)	분류코드 (KSIC-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6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은 제외한다)	27111 27212 27213 27216 27219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50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91 29199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2 29250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9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2

<비고>

1.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5>

그린 분야

1. 환경산업 (출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세부분야	관련 업종
자원순환관리	폐기물 관리, 폐자원 에너지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재생용 가공원료 및 재활용 제품 제조업 재활용제품 ·유통업 자원순환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물관리	오·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수도사업 관련 제조업·서비스업 물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복원 및 복구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환경복원 및 복구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기후대응	기후변화 대응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기후대응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대기관리	대기오염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실내공기질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대기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 안전·보건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보건 대응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환경안전·보건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열·에너지 절약 및 회수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자원 관리, 보전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리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다양성 및 바이오관련 생산업·제조업·서비스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지식· 정보·감시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업 환경 관련 법무, 교육 서비스업 환경 지식·정보·감시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2. 녹색기술(인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녹색 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보유 기업

* 분야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30개 소분류로 구성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

** 녹색기술인증 현황 및 범위의 세부사항은 www.greencertif.or.kr 참조

3.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출처 :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혁신성장공동기준)

테마	분야	품목
제조· 모빌리티	제조공정	고부가 표면처리기술, 스마트 패키징
	모빌리티	전기·하이브리드차,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 수소전기차
	조선·해양	고효율·친환경 선박
소재·부품	핵심광물/ 미래유망소재	압전·열전소자, 바이오 화학소재, 이온성 액체(이온 전도체), 친환경섬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재생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원자력·핵융합	원자력발전, 차세대원자로·SMR, 원전플랜트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연계 공정열원생산, 핵융합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슈퍼커패시터
	에너지 효율향상	초임계CO2 발전시스템, 가스터빈 발전, 무탄소 가스발전, 액화기술, 폐열회수, 에너지 하베스팅, 고온환원처리 시스템,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분산에너지 시스템, 지능형 공조시스템,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스마트 직류배전, 초고압직류 송배전, 가정용에너지 관리, 제로에너지빌딩, 히트펌프, 고기능 단열시스템
	이차전지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무선충전, 이차전지 재사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원전연계 수소생산
환경· 스마트 농축수산	환경개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 냉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토양정화, 통합환경관리서비스, 스마트 상하수도, 친환경 연료
	자원순환	금속자원 재자원화, 담수화, 모듈러 건축,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유니소재화 제품, 재제조,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폐자원에너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스마트 농축수산	수직농법,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어업
	그린바이오	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 개발·육종,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푸드테크	푸드 업사이클링
융합지식 서비스	지식서비스	ESG 정보 서비스

* 혁신성장 분야(7차 개정) 5개 테마, 16개 분야, 78개 품목과 연계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관련) (2022.7.5. 개정)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단,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5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 중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참고 7>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기업
	· NET, NEP 인증기업
	· 녹색기술인증기업
	· 뿌리기술전문기업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경영혁신 분야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 기업
	· 명문장수기업(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 강소기업(강소 단계 이상) 지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업종전환, 업종추가)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신사업 분야에서 동일 업종 내 신제품·서비스 추가,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신사업 추가)

□ 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table>
<tr><th>유형</th><th>내용</th><th>성공</th></tr>
<tr><td>업종
전환</td><td>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td><td rowspan="2">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규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규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이상을 차지</td></tr>
<tr><td>업종
추가</td><td>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td></tr>
<tr><td rowspan="2">신사업
추가</td><td>신사업분야 新제품·
서비스 추가, 新제공방식 도입</td><td>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사업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 이상을 차지</td></tr>
<tr><td colspan="2">* (신사업분야) 지역특구법 지정 사업 등 6개 분야 기술·제품·서비스</td></tr>
</table>

※ 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 대기업 공급망 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협력하여 신사업 전환에 연착륙 하도록 지원

□ 공동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유형	성공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신사업분야 관련 매출액 총합이 전체 매출액 총합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 총합이 전체 종업원수 총합의 30% 이상을 차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 간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공동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통상조약 등*(FTA 포함)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통상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통상영향의 종류

무역변화 유형	주요내용
동종 또는 경쟁 품목 수입 증가	■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동종 또는 경쟁품목)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동종·경쟁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감소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생산품 수출감소	■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기업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FTA는 '25.11월 기준 59개 국가와 22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발효

□ 영향 및 우려 여부 판단기준

무역변화 유형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영향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동종 또는 경쟁 품목의 수입이 최근 6개월간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하였고, ■ 현재 매출,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영향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 현재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재고, 국내 대체품 여부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최종생산품 수출감소	영향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으로, ■ 동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외 타 국가 또는 국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참고 10>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참고 11>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비고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섬유
	직물 직조업	1321	
	직물제품 제조업	1322	
	편조원단 제조업	133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91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1392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겉옷 제조업	1411	섬유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2	
	한복 제조업	1413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	
	모피제품 제조업	1420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11	생활용품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	
	신발 제조업	1521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16211	생활용품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0	생활용품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1721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제책업	18122	생활용품

구 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비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생활용품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2042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화학섬유 제조업	2050	섬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10	제약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	
	한의약품 제조업	2122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1	생활용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1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산업용 유리 제조업	2312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1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23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표시장치 제조업	2621	전기전자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	
	컴퓨터 제조업	2631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32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1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2652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5	생활용품

구 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비고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	전기전자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2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282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	
	조명장치 제조업	2842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	일반기계
	유압기기 제조업	291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3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4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6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7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	
가구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제외)	3201	생활용품
	목재가구 제조업	3202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99	
기타 제품 제조업(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	생활용품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	
	악기제조업	332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	
출판업(58)	서적 출판업	5811	생활용품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5812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	

구 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KSIC-11)	비고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생활용품
식료품제조업 (10) 1차금속제조업 (24)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0309 10520 24221 25130 25992 25999	기타

<참고 12>

해외법인지원자금 지원 기준, 용도 등

□ 해외법인 기준

○ 대상국가 : UAE(아랍에미리트),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태국, 프랑스

○ 대상업종 : 국내기업과 동일·유사* 업종 영위(예정)

* 국내모기업이 생산·개발·유통하는 제품·기술·용역을 제조·판매·유통·제공(예정)하는 해외법인((예) 국내 모기업(제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법인(유통업)의 경우 업종이 다르나 지원가능)

○ 지배여부 :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예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으로 인정

국내기업의 지배력 인정 범위
1.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인정. 다만, 경영권 행사 권한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불인정(예, 주요 경영활동이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또는 청산인 또는 감독당국의 지시 대상인 경우 등)
2.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하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불인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인정
가. 국내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주주와 계약 등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나. 국내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을 지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다. 국내기업이 전략적 투자자(공동투자자, 합작투자자 등)와 함께 투자하여 해당 외국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경우

□ 자금용도

○ 국내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해외법인의 운영과 설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운전자금으로 활용 또는 해외법인에 대여 가능

용도	세부내용
경영 활동	• 해외법인의 운영(설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운전자금 활용 -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 및 해외시장 개척, 해외법인 인건비, 해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회계 자문, 해외법인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구입 등 해외법인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해외 이전	• 해외법인의 운영(설립)을 위해 대여하는 자금

□ 기타사항

○ 기업평가 시 해외법인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별도 제출

○ 성장공유형 대출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 중 자금소요 규모, 미래 성장 가능성, 투자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검토

○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 후 1년 내 해외법인 설립완료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

– 해외법인 설립 사실 및 지배력 보유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미설립 시 대출금 회수 조치 예정

<참고 13>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상세요건 등

□ 자금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음 대상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사실상 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 대상사업 : ①혁신성장촉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25~'26년), ②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22년~'25년), ③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사업(LIPS Ⅰ) 지원기업('23년~'25년), ④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LIPSⅡ) 지원기업('25~'26년)

– 사실상 소기업 성장 기준 :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소기업 기준*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 지원내용 : 기업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도 총 대출한도(최대 8억원)를 설정하고 1차년도 대출지원(총 대출한도의 50%)

– 2차, 3차년도는 별도의 기업평가 없이 제한사항 점검 및 성과측정을 거쳐 요건 충족시 총 대출한도의 각 30%, 20%를 대출

○ 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창업기반지원(일반)', 업력 7년 이상(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포함) 기업은 '혁신성장지원' 자금을 지원

【 마일스톤자금 지원절차 】

자금신청 (1차년도)	⇨	기업평가 (1차년도)	⇨	대출지원 (1차년도)	⇨	성과측정 (2·3차년도)	⇨	추가대출 (2·3차년도)
· 융자대상 기업 자금 신청·접수		· 융자결정 및 3개년 총 대출한도 설정		· 1차년도 대출 약정 및 집행		· 제한사항 확인, 매출·고용 성과측정		· 성과달성 시 추가대출 집행

○ 지원조건 :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과 동일하게 지원(직접대출 방식, 운전자금 용도)

□ 추가대출 요건(2차, 3차년도)

○ 제한기준 : 융자공고의 융자제한기업 기준 및 아래의 추가대출 제한기준을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추가대출 제한

【 추가대출 제한기준 】

구 분	내 용
1	1차년도 대출 후 실질기업주 변경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 상태
3	추가대출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소기업 기준 미달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 성과기준 : 기업의 매출과 고용 두 지표를 점검*하여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지표가 한 개 이상인 경우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대출 지원

* 매출 지표는 표준 재무제표, 고용 지표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성과 점검

□ 추가대출 일정

○ 2차, 3차년도 각 연도별 3분기 중 대상기업에 일괄 신청·접수 및 요건(제한, 성과) 검토를 거쳐 추가대출 지원 예정

* 추가대출 관련 상세 기준은 1차년도에 기업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으로 총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참고 14>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내용

□ 사업개요

○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접목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

□ 지원대상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AI 및 AI 관련 분야 영위 또는 AI 도입·활용 중소벤처기업**

* '26년 중기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가 선정 예정

** <참고 1> 혁신성장분야 內 산업AI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영위하거나 도입·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기반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지원

*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원조건)**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을 따름

○ **(우대사항)**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0.1%p 인하) 및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60→100억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수시접수 및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 패스트트랙 적용

□ 기타사항

○ 혁신성장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대출 가능

<참고 15>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

1.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① 온라인 사업 신청(디지털지점)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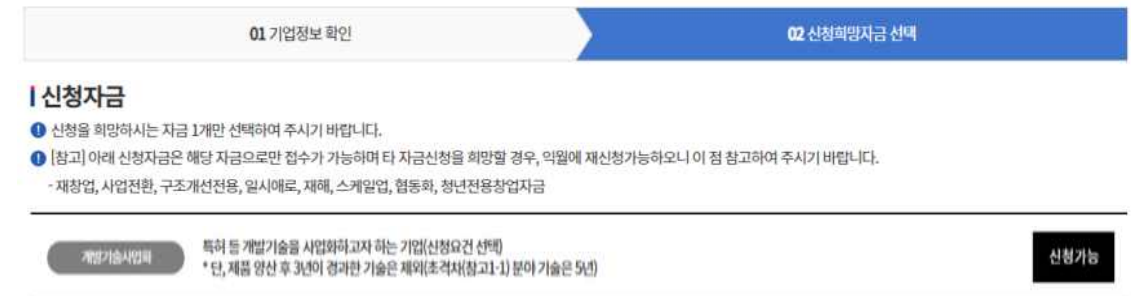
2. 신청자금 선택

- ①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 ② 신청희망자금 선택

①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② 신청희망자금 선택



3. 신용정보 동의

- 기업 및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용정보제공 동의 진행



4. 사전기업진단

- 중소기업, 창업기업, 융자제한기업 여부 등을 판단



5. 서류제출

- ①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 ② 필수서류 자동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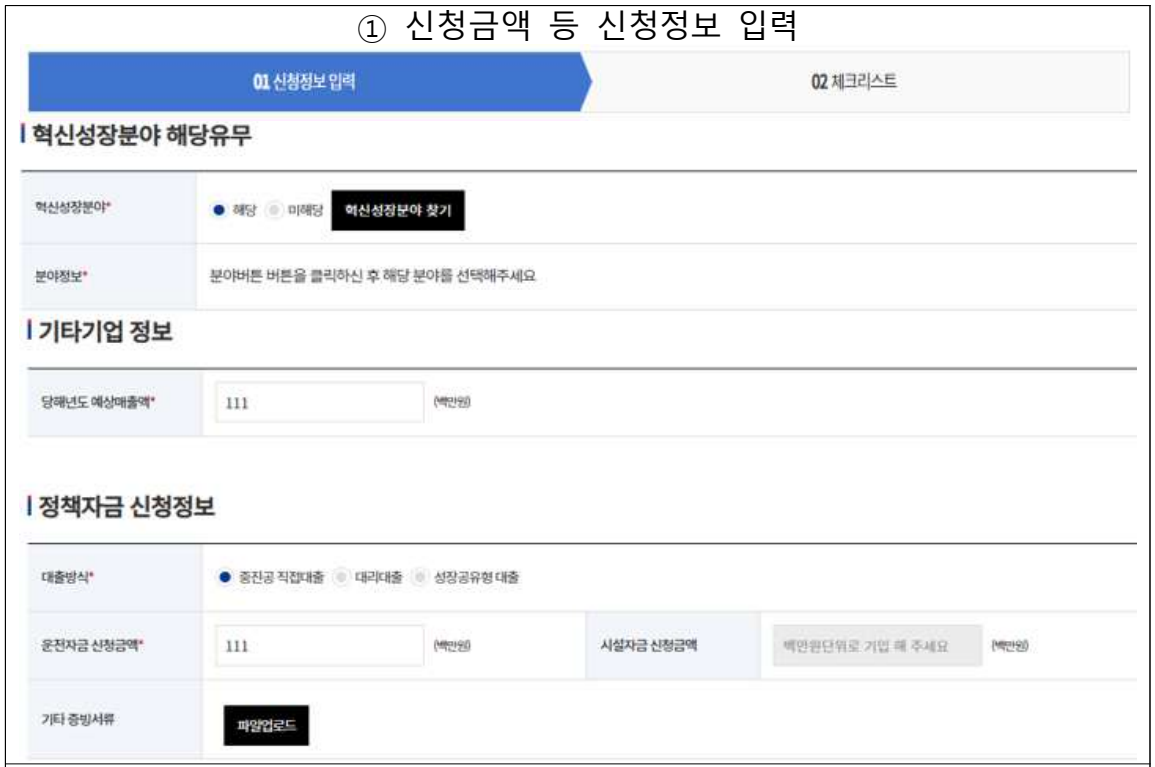
② 필수서류 자동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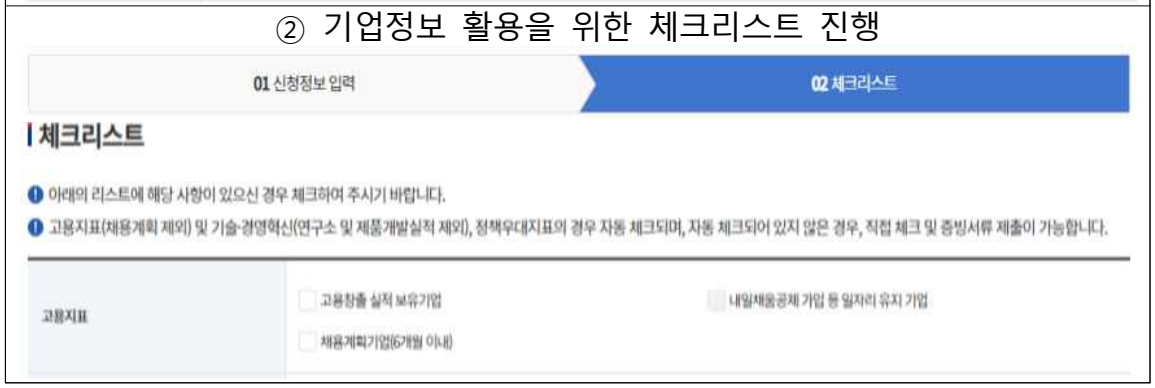
6. 체크리스트

- ①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 ② 체크리스트 진행

①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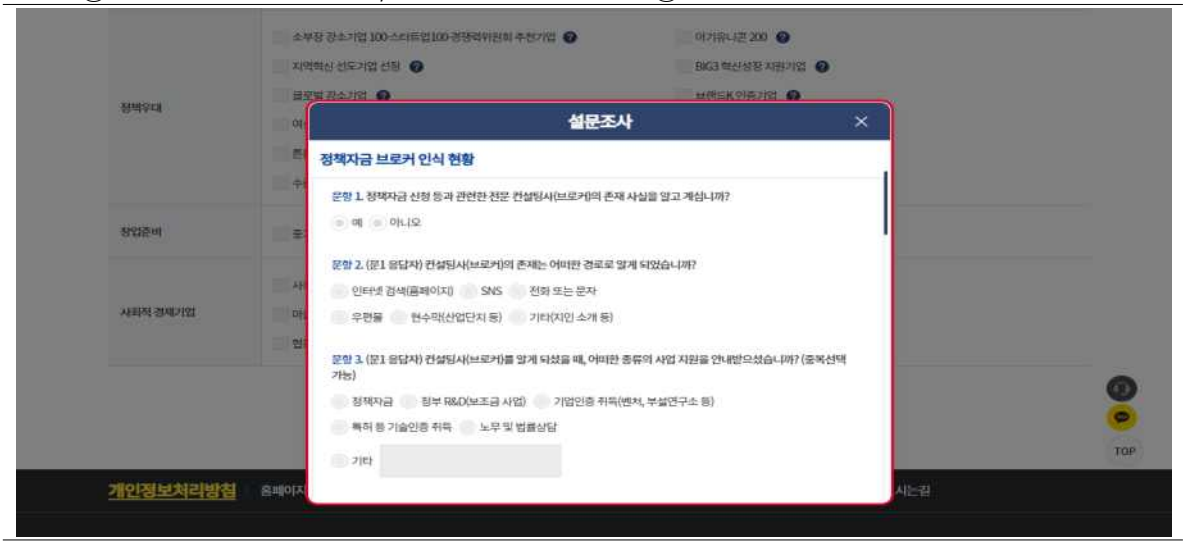


②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진행



7. 최종신청서 제출 前 설문조사

- ① 입력정보 확인 후, 동의 및 제출 → ② 설문조사 작성



8.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



9. 정책자금 신청내역 확인

- '디지털 지점' 화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내역'에서 신청이력 확인 가능

정책자금 신청이력 확인

